KOSHA GUIDE X - 12 - 2012

산림작업 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 리스크관리 연구위원회

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박재득

○ 개정자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10년 9월 위험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2년 4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등 반영)

○ 관련규격 및 자료

- Managing health and safety in forestry: 2003, HSE
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산림작업 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림 작업 시 산림소유자, 산림작업관리자, 도급업체, 근로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산림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산림소유자(Landowner)"라 함은 산림작업이 이루어지는 산림의 소유자를 말한다.
- (나) "산림작업관리자(Forestry work manager)"라 함은 산림 경영에 관하여 최고의 의 사결정을 내리고, 경영활동의 전체적 수행을 지휘·감독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관을 말한다.
- (다) "도급업체(Contractor)"라 함은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X-1-2011(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KOSHA GUIDE X - 12 - 2012

4. 산림소유자의 역할

4.1. 안전보건을 위한 산림환경

- (1) 산림소유자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.
- (2) 산림 지대에서 작업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체계화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산림지대에서 작업할 시 과거의 사고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
- (나) 산림에서의 작업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
- (다) 안전보건을 위해 외부와 협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
- (라) 산림에서의 차량이동을 확인

4.2. 산림 현장의 리스크 정보 수집

- (1) 산림작업관리자에게 리스크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작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산림지대에서 안전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리스크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- (가) 출입하는 경로
- (나) 송전선
- (다) 지하매설물
- (라) 경사지 또는 위험한 지역(함몰지, 절벽 끝 등)
- (마) 강풍의 우려가 있거나 질병에 걸린 나무가 있는 지역
- (바) 외부출입자, 동물

X - 12 - 2012

- (3) 산림 현장으로의 진입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
- (4) 진입로의 상태, 경사도, 임도(Forest road)의 허용하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5) 적절한 자동차 배치, 전환장소, 일방통행 등에 대하여 산림작업관리자, 목재 등 운송 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4.3. 안전보건 확보

- (1)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작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보건을 보장받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가) 리스크 관리 방안
- (나) 산림작업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훈련 및 관리
- (다) 주말근무의 제한
- (라) 작업장 접근 방지
 - ① 산림 지대로의 출입정보 제공
 - ② 경고 및 금지표지
 - ③ 목재 운반경로, 중량제한, 도로표지판

5. 산림작업관리자의 역할

5.1. 일반사항

(1) 산림작업관리자는 작업장의 리스크 평가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.

X - 12 - 2012

- (2) 안전보건에 대한 적합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3) 도급업체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(4)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사항을 감시하여야 한다.

5.2. 리스크 평가

- (1) 리스크 평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(가) 작업에 적합한 장비 및 재료
- (나)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
- (다)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관리 방법과 안전한 작업 수행
- (라) 작업장에서 목재 운반 방법
- (2)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선택하여야 한다.
- (3) 리스크 평가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 한다.
- (4) 산림소유자는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통하여 작업장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.

5.3. 도급업체 선정

- (1) 도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안전보건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(2) 도급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림에서 필요한 안전기술 및 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.
- (가) 안전기술
 - ① 경력
 - ② 관련교육을 받은 장소 및 시기

X - 12 - 2012

- ③ 안전보건 및 응급 처치 교육
- ④ 전문 자격증
- ⑤ 운송업자의 산림 작업 경력
- (나) 관리능력
 - ① 기계 및 차량이 작업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
 - ② 작업장에서 필요한 개인 보호구
 - ③ 장비 유지・보수 방안
 - ④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준비 사항

5.4. 산림소유자와의 협력

- (1) 산림작업관리자는 작업장의 작업현황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(2) 산림작업관리자는 산림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가) 작업하는 동안 작업장으로의 접근 통제 방안
- (나) 작업장 및 장비 이동 정보
- (다) 자동차 배치 및 목재 이송 정보
- (라) 작업 종료 후, 목재 등 운송업체를 위한 준비사항

6. 도급업체의 역할

도급업체는 산림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쉬우므로 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, 산림작업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.

X - 12 - 2012

6.1. 산림작업관리자와의 협조

- (1) 산림작업관리자는 안전보건 규정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.
- (2) 목재 등의 운송방식은 변경가능하며 교통 체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3) 산림작업관리자와 도급업체의 협력은 안전규정의 준수와 같이 작업장에서의 적절한 통제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.
- (4) 도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가) 산림작업관리자에 의해 지정된 안전보건 조건의 충족
- (나) 산림작업관리자가 동의한 통제 조치의 적용
- (다) 작업장 안전 수칙
- (5) 운송업체가 작업장을 방문할 경우 현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미리 연락하여야 한다.

6.2. 작업별 필요사항

- (1) 기계톱 작업자
- (가) 나무를 자르기 위한 안전 절차
- (나) 올바른 기계톱 보호구 착용
- (2) 방제(약제) 작업자
- (가) 작업에 적합하게 설계된 장비 사용
- (나) 사용하고 있는 유해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
- (3) 장비 작업자

X - 12 - 2012

- (가) 장비에 대한 전문적 기술
- (나) 작업과 관련된 경력
- (다) 장비 유지 방법
- (4) 운반 작업자
- (가) 산림작업 환경에서 일한 경력
- (나) 대형 트럭 운송에 대한 전문적 경험
- (다) 운전자의 적절한 훈련과 목재 운반 경험
- (라) 운전자의 화물을 운반하거나 높이 쌓고 들어 내리는 기계 등의 사용 경력
- (마) 응급 상황 및 단독 업무 절차의 수립
- (바) 차량의 정비 절차

7. 근로자의 역할

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7.1. 안전보건 활동

- (1) 지시사항과 안전 규칙을 따라야 한다.
- (2) 지름길이라도 위험하면 안전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.
- (3) 사고, 위험한 상황, 작업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(4) 운전자는 특정 노선을 준수하여야 하고, 임도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

X - 12 - 2012

한다.

(5)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, 비상사태 등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.

7.2. 안전보건 관리

- (1) 산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의 장비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.
- (3) 명시된 규칙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산림작업 조직도의 예시는 <별지 그림 1>을 참조한다.

KOSHA GUIDE X - 12 - 2012

<별지 그림 1>

산림작업 조직도

